

New Zealand Family Courts

아동양육법 2004(Care of Children Act 2004) 안내

소개

아동양육법 2004 는 2005 년 7 월 1 일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후견인법 1968 을 대체합니다.

본법으로 아래 사항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 아동의 후견
- 양육에 대한 합의
- 위 합의에 대한 분쟁 해결

본법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화시켰습니다.

본법은 또한 현재 뉴질랜드의 아동들이 여러 형태의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법의 변경사항 요약

본법은

- 아동의 권리를 더욱 강조합니다.
- 부모역할의 협력을 권장합니다.
- 아동을 돌보기 위해 현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가정을 인정합니다.
- 가정법원(Family Court)의 진행과정을 더 공개합니다.
- 법원에게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때 더 많은 재제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아동양육법은 아동의 복지와 이익을 가장 중요시 합니다.

아동의 권리 더욱 강조

아동양육법 2004 는 아동의 복지를 가장 중요시 합니다. 또한 본법은 아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결정은 아동이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간 안에 결정되고 실행 될 것을 강조합니다.

본법은 부모의 권리에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으로 초점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우선이다

본법은 아동에 대한 복지와 배려가 그들에 대한 어떤 논쟁 보다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우선임을 강조합니다

아동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부모와 후견인은 아동을 잘 보살피고 양육하는것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진다.
-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것에 대한 꾸준한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 아동과 그들의 핵가족 혹은 대가족과의 관계는 보존되고 더 긴밀해져야 한다.
- 부모, 후견인 그리고 아동을 돌보는데 관계되는 사람들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
- 아동은 모든 유형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해야 한다.
- 아동의 문화, 언어 그리고 종교를 포함한 아동의 정체성은 보존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의 얘기에 귀 기울이자

본법에 의한 가정법원의 결정은 아동의 일상생활과 그들 부모와의 장기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본법은 가정법원의 절차에 참여하는 아동이 그와 관련되어 내려질 결정, 예를들면 누구와 살아야 된다는 결정등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절차참여권을 강화시켰습니다.

판사는 결정을 내릴 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을 위한 변호사

본법에 의해 가정법원은 이전처럼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에 대해 법원이 판단해야 될 것 같으면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절차와 부모들 간의 모든 협상에서 아동을 대리한다
- 아동의 견해를 알아내어 판사에게 알린다.
- 아동을 위한 최선의 방법 그리고 아동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를 법원에 제시한다.
- 아동에게 법정절차를 설명해주고, 절차가 끝나면 판사의 결정을 설명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Lawyer for the Child (아동을 위한 변호사)** 팜플렛을 참고하십시오.

아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본법은 아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본법에 의한 대부분의 결정, 예를 들면 "parenting orders (친권명령)" 에 대해 불복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변호사는 아동에게 불복 권리를 설명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아동이 불복하기를 원하면 아동이 불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청소년은 부모나 후견인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6 세 이상의 청소년은 부모나 후견인이 내린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법원에 그 문제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은 18 세에 종료

본법은 후견이 종료되는 나이를 20 세에서 18 세로 낮추었습니다. 후견은 또한 16, 17 세의 청소년이 marriage(결혼)하거나 Civil Union (시민결합)관계로 들어서거나 또는 de facto (동거) 관계로 들어서면 종료가 됩니다.

(이와같은 결혼 유사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요합니다.)

18 세의 나이는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 아동 권리 헌장)에 따른 뉴질랜드의 의무에 부합합니다.

부모역할의 협력을 권장합니다

“권리”에서 “책임”으로

본법은 부모들이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보다 그들의 자식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본법에 사용되는 어휘들은 이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법은 양육권(custody)이라는 말 대신에 매일보육(day-to-day care)이라는 말로 바꿈으로써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직접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와 가정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간을 쪼개어 매일 매일의 보육을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보육을 담당하지 않는 부모에게 아이들과의 **접촉(contact)**이 장려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에는 **접견(access)**이라고 했습니다.

본법은 양육명령과 접견명령을 "**parenting orders(친권명령)**" 으로 대체합니다.

중단없는 부모역할

본법은 부모의 책임이 **중단 없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부모가 헤어졌을 때 부모 양쪽 다 아이들의 양육에 의미 있는 역할을 지속해야 합니다. 비록 더 이상 아이들과 함께 살지 않는 부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양육계획을 부모 스스로 정할 것을 권장

본법은 부모가 아이들 양육계획에 대해 협력하고 합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통상 그것이 특히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훨씬 좋습니다. 부모는 다만 양육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나 법원에 의해 제공된 상담의 도움을 받고도 문제해결에 이를 수 없으면 법원의 관여를 요청할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양육계획을 스스로 합의한 부모는 그들이 원하면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한 "**parenting agreement(친권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위 합의를 기초로 법원에 "**court order (법원 명령)**"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arenting Agreements(친권합의)** 팜플렛을 참고하십시오.

부모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것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들은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무료상담**의 제공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상담전문가가 부모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도울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Counselling(상담)** 팜플렛을 참고하십시오.

상담 후에도 부모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상담이 잘 되지 않았으면 부모 중에 한쪽 혹은 양쪽 모두 가정법원에 친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mediation conference (중재회의)**" 를 먼저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정법원 판사 혹은 때때로 중재전문가가 부모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도울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The Mediation Conference(중재회의)** 팸플릿을 참고하십시오.

법원 청문 - 마지막 절차

상담도 중재회의도 실패하면 마지막으로 정식 법원청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법원은 "**parenting order (친권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아래 사항을 다룰 수 있습니다.

- 언제 누가 아이들에 대한 **매일보육권**을 가질 것인가
- 한쪽 부모만이 매일보육권을 가지게 된다면 다른 쪽 부모는 언제 어떻게 아이들을 **접촉**할 것인가

법원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아이들에 대한 **복지와 최선의 배려**가 친권명령을 결정할 때 법원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참고할 리포트를 준비할 전문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리학자에 의한 리포트 혹은 아이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리포트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s(아동, 청소년, 가정 복지부)**"의 사회사업가에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문화적 배경이 법원이 내리게 될 결정에 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는 법원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Parenting Orders(친권명령)** 팸플릿을 참고 하십시오.

친권명령 수행하기

만약 한쪽 부모가 친권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우선 법원은 부모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하면 마지막 조치로 법원은 그 상황을 타개할 여러가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와 가지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혹은 부모에게 이행보증금을 지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계속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잃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Breaches of Parenting Orders(친권명령 위반)** 팸플릿을 참고하십시오.

아동 양육에 대한 다양한 형태 인정

요즘 뉴질랜드의 아동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양쪽 부모에 의해서, 대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혹은 더 넓은 의미의 가족그룹에 의해서 혹은 동성 파트너들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가족 그룹의 역할

본법은 아이들이 그들의 대가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가족 혹은 종족그룹과의 유대를 긴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법은 또한 대가족 구성원과 그 외의 더 넓은 의미의 가족그룹들이 아이들 양육에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가정법원의 허락을 얻으면 대가족 구성원과 그 외 더 넓은 의미의 가족그룹은 법원에 친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 한 명을 후견인으로서 선임 가능

한쪽 부모가 최소 1년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도울 새로운 파트너를 가지게 되면 그 부모는 그 파트너를 아이들의 법적 후견인으로 선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다른쪽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가정법원 사무장 (A Family Court Registrar)은 우선 선임 신청서가 법적 하자가 없는지 살핍니다. 신청서는 알맞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고 서류상 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견인 선임 신청이 거부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단지 한 명의 새로운 파트너만이 이런 방식으로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견인 한 명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Parents Appointing New Partners as Guardians (부모가 새로운 파트너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기)** 팸플릿을 참고 하십시오.

가정법원의 대폭적인 개방성

소개

본법은 일반인들이 가정법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더욱 잘 알게 하고 동시에 부모와 후견인들이 민감한 가정문제를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편안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자기를 지원하는 참고인 데려가기

부모들이 상담과 조정절차에 참여하고 거기에 자기를 지지하는 참고인 즉, 새로운 파트너, 친구 혹은 가족 구성원을 데려갔으면 본법은 이들이 법정에 출석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판사는 그 외 사람들이 부모를 지지하는 참고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Appearing in the Family Court(가정법원에 출석하기)** 팸플릿을 참고하십시오.

뉴스기자가 법정에 참석할 수 있다

본법은 본법에 따라 열리는 가정법원 재판에 뉴스기자가 참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취재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 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이름도 게재할 수 없으며 아동, 부모 혹은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즉 참고인이나 증인 등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게재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사람들을 퇴정시킬 수 있다.

또한 판사는 재판진행 중에 양 당사자와 변호사를 제외한 누구라도 재판정에서 퇴정시킬 수 있습니다.

판결내용의 공표

가정법원의 판결내용 중 일부는 법원의 웹사이트(www.justice.govt.nz/family)에 공표되지만, 관련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름을 삭제합니다. 판결이란 특정 사건에 대한 판사의 서면 결정문이며, 거기에는 판결 사유가 포함되며, 때에 따라서는 동 사건에 적용되는 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통역자

상담, 중재절차 그리고 법정출두 시에 법원에서 통역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가정법원 사무담당(Family Court Coordinator)이나 지역 가정법원 사무실의 직원들에게 문의 하십시오.

Legal aid (변호비용 지원)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비용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변호사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불하는 것 입니다.(때때로 나중에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환불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곳에서 변호비용지원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무실에 문의 하십시오.(전화번호부 앞에 정부부서가 나와 있는 블루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Legal Services Agency" 의 홈페이지 www.lsa.govt.nz 를방문해 보십시오.
- 변호사와 변호비용지원에 대해 상담해 보십시오.

변호비용지원은 이혼사건을 제외한 가정법원의 모든 사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나 조언이 필요하십니까?

아동양육법 2004(the Care of Children Act 2004)에 대해 더 많은 정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가정법원 홈페이지 (www.justice.govt.nz/family)를 참조하시고, 가정문제 전문변호사(www.familylaw.org.nz)나 지역 법률센터, 혹은 가까운 가정법원 사무실에 문의 하십시오.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